

사례를 통해 PL법을 이해하자

PL법이 200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가, 소비자 모두 PL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사례를 통해 PL법을 이해하고자 한다.

[사례 1] 제조물의 정의 중 1차 산업품은 제외
A씨는 중국에서 고등어를 들여와 팔고 있다.
그런데 고등어를 사먹은 소비자 B씨가 고등어에서
수은이 검출됐다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경우 제조물책임법으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서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
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
된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는 제조물의 설계, 가공, 검사, 표시를 포함한 일
련의 행위로 일반적으로 원재료에 손을 더해 새로운 물
품을 만드는 제2차 산업에 관계가 있는 생산행위를 가
리키며 1차 산업제품, 서비스의 제공은 제외된다.

가공은 동산을 재료로 사용해 그 본질은 유지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더하는 것이며 동산
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중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이외의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중국산 수입 고등어에서 수은이 검출됐어도
고등어는 제조물이 아니므로 제조물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만 지게 된다.

한편 부동산은 제조물이 아니므로 아파트의 흠으로 인
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규제 대상이 안 된다.

[사례 2] 피해·위험 감소 조치를 안 했을 땐 배상
A씨는 B씨가 만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급격
하게 우회전하면서 튕겨져 나가 엉덩방아를 찧어
왼쪽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버스에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은 설계상의 결함 때문에 다쳤다고 제
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설계, 표시 등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함의 종류에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
상의 결함, 기타 유형의 결함이 있는데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만들 때 제조, 가공상 주의 의무의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
르게 제조된 것이다. 예를 들면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식품에 들어가거나 자동차에 부속품이 빠져 있으면 제
조상의 결함에 해당된다.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
를 이용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
에도 대체설계를 사용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
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녹즙기에 어린이들의 손가락
이 잘려 나간 경우처럼 설계자체에 안전성이 결여된 것
이다.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이나 지
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했다면 제조물로 인한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

은 경우이며, 기타 유형의 결함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위의 버스 사건에서 법원은 A씨가 자신의 부상과 제품 설계상의 결함 사이에 개연성이 인정될 정도의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버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은 설계상의 결함을 이유로 B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사례 3】 부품 결함 피해 때 납품업체도 책임
A씨는 B사가 만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불이나 손해를 입었다.
화재의 원인은 C사가 납품한 공기청정기의 부품인 콘덴서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B사와 C사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

가공한 기호 등 할 사항에 사인할 제조업체 제조, 기호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한다.

또한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진다(제3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기청정기 제조업자인 B사와 콘덴서 제조업자인 C사 모두 제조업자에 해당돼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A씨는 화재당시 화재의 원인이 콘덴서의 결함에 있는지, 콘덴서의 납품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우선 공기청정기 제조업자인 B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B사는 손해배상을 해준 후 C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C사는 이에 응해

야한다.

그러나 콘덴서의 결함이 공기청정기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발생했다면 C사는 면책이 된다(제4조제1항제4호)

【사례 4】 제품 결함 피해 때 제조업체 책임
A씨는 내구연한이 5년인 TV를 사서 6년 정도 썼는데 TV가 폭발해 손해를 입었다.
A씨는 제조업자 B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까?

제조업자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제조업자측에서는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위의 사건 TV는 제조업자가 설정한 내구연한이 다소 지났더라도 정상적인 이용 상황 상태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법원은 제조상 결함을 인정해 제조업자인 B사에 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출처: 한국경제신문)